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차인영 의원 발의】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25호로 2025년 5월 30일 차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활용분야, 이용의 활성화, 데이터책임관(안 제6조 ~ 제9조)

마. 데이터의 수집·관리, 민간데이터의 구매(안 제10조 ~ 제11조)

바. 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안 제12조 ~ 제13조)

사. 데이터플랫폼, 실태 자체 점검, 평가 및 보상(안 제14조 ~ 제16조)

아.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행규칙(안 제17조 ~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6.3.~2025.6.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4차 산업혁명으로 분야 간 경계 완화·융합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가속화되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¹⁾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 데이터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책 사례로는 △ 버스 정류장 현황, 승하차, 생활이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출퇴근 맞춤형버스 도입 지원, △ 범죄 신고, 유동 인구 및 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순찰 우선순위 추천 및 치안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 대기질 통계, 버스 이용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쉼터 우선지 선정²⁾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구(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을 제고하고자 제정됨.

1) 출처: 「과학기술 ICT 분야 동향 분석 및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보고서, 2023.8.25.)

2) 빅데이터 활용 정책 사례(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우수사례 수상작)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심의위원회, 데이터 책임관, 데이터 플랫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 데이터산업,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정의 규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관련 정책 수립 및 행정, 기술, 재정적 조치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본 조례 따름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기능 대행 가능
제7조	활용분야 등	데이터 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함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추진 가능 사업 - 데이터 분석 사업 -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데이터책임관	데이터책임관 :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함 보좌관 : 소관업무 부서의 장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관리	데이터 제공 요청 - 요청주체: 데이터책임관 - 요청대상: 데이터 생성·관리 부서 장 - 제공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제11조	민간데이터의 구매	민간데이터 구매 가능
제12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 요구 - 요청주체: 데이터책임관 - 요청대상: 데이터 생성·관리 부서 장
제1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생성·취득·관리 공공데이터 적극적 공개 - 제공 예외 및 제공 예외 부분 분리 가능 시에는 제외한 데이터 제공 가능함

제14조	데이터플랫폼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의 근거 - 공공기관의 시스템과 상호연계, 통합, 공동활용
제15조	실태 자체 점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자체 점검 가능
제16조	평가 및 포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 인정 시 표창 수여 가능
제17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노력
제18조	시행규칙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공공데이터법」 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에 각각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한 사안이며,
-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데이터책임관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 하고 주관 부서를 보좌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 따르면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생성·관리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 요청 권한, 데이터 품질 진단 평가에 대해 개선 요구 권한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취득·관리 중인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근거와 더불어 실태 자체 점검, 평가, 표창,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우리 구 행정예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활용 될 수 있는 환경 수립에 관련한 내용들을 담음.

○ 종합의견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3.7.30. 제정되었고 그 이후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6.9. 제정됨.
- 또한 우리 구(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여의도 봄꽃 축제 빅데이터(유동인구, 축제매출, 쓰레기 배출 등)를 분석하여 차기 봄꽃 축제 관리를 위해 활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관내 안양천 방문자 이용 현황 분석(수도권 생활이동 인구, 도로명 주소 공간정보 등)을 통해 수변 문화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각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 중이긴 하나, 상호연계·보완적인 두 법률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담아 우리 구(區)의 종합적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를 가짐.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데이터 기반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區)에서는 아직 전담 조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의 관련 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자 료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생략)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생략)